

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입찰 공고
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두류 지하도상가 점포에 입주할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입찰건명 : 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입찰 공고
- 나. 소 재 지 :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지하 1760 두류 지하도상가 내
- 다. 입찰내용 : 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21개(상세는 붙임 파일 참조)
 - ※ 예정가격은 연간 사용료 예정금액이며,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.
 - ※ 관리비는 별도이며 월별 부과됩니다.
 - ※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.(입찰로 결정된 첫해연도의 사용료 ×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÷ 입찰당시의 재산가격)
 - ※ **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**입니다.
- 라.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: 2026. 4. 8.(수) 10:00 ~ 2026. 4. 14.(화) 16:00까지
- 마. 입찰서 제출처 :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“온비드”(http://www.onbid.co.kr)
- 바. 개찰일시 : 2026. 4. 15.(수) 10:00(개찰결과는 18:00 공개)
- 사. 개찰장소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PC

2. 입찰 참가자격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 - 공단이 제시한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공고일 현재 **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**를 둔 자
 - ※ 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점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대구·경북일 것 (지사의 경우 대구·경북의 지방세납부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만 허용)
 -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이하“온비드”라 함)에 이용자(회원)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
 -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 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,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참가자격이 없음
- 나.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3. 입찰 조건

- 가.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.
 - 반월당·보상·두류·대신·대구역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하여 사용허가 중인 자
다만, 현재 사용하는 점포에 접하여 있는 입찰물건에 대해서만 참가 가능(점포 확장)
 - 우리 공단 지하도상가와 관련하여 체납금이 있는 자
 - 기존 공단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※ **본 입찰은 1인 1점포만 신청 가능합니다. 중복입찰(2개 점포 이상) 시 해당 입찰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.**
- 나. **업종제한** : 본 입찰은 지하도상가의 특성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종을 제한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, 낙찰 후에도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 - 용도 제한 : **무인점포·사무실·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도상가에 응찰할 수 없음**
 - 법적 제한 : 「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업종은 지하도상가에 응찰할 수 없음

연번	금 지 업 종
1	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의한 가스 취급업
2	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
3	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류 판매업. 다만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한다.
4	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
5	소음·진동·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
6	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, 극장 등의 업종
7	그 밖에 위생·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

- 지정 업종 안내 :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**E10-3, E19 점포(붙임 파일 참조)는 음식점업(카페 포함)으로 영업업종을 한정**하며, 이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

4. 입찰방법

- 가. 입찰서는 반드시 “온비드(http://www.onbid.co.kr)”의 인터넷 전자입찰을 이용한 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입찰서의 제출은 “온비드”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“온비드”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

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“온비드”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
- 다.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(지역제한)로 실시합니다.
- 라. 1인은 1개 점포(붙임 파일의 1개 입찰물건 기준)만 응찰할 수 있으며, 2개 점포 이상 입찰서 제출시 개찰순위와 관계 없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.
- 마. 동일인이 동일한 입찰물건에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.
- 바.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.
- 사. 입찰자는 반월당·봉산·두류·대신·대구역 지하도상가 점포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응찰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입찰서 제출시 나중에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.
- 아. 반월당·봉산·두류·대신·대구역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하여 사용허가 중인 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현재 사용하는 점포에 접하여 있는 입찰물건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(점포 확장)

5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
- 가.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“온비드”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 여부는 “온비드”화면에서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나.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,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다.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며,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라. 낙찰자의 사용허가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.

6. 낙찰자 결정

- 가. 본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나. 낙찰될 수 있는 동일금액을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“온비드”시스템상 무작위추첨 방법(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)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- 다. 낙찰자가 우리 공단 지하도상가와 관련한 체납금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.

7. 입찰의 무효

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“온비드”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.

8.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

“온비드”장에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의 공고는 “온비드”의(입찰공고-연기공고, 취소공고) 게재에 의합니다.

9. 사용 허가 및 대금납부 방법

- 가.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서 안내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공단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1차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해당 기간 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한 내 1차년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 처리되며,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.
- 나. 사용료는 1차년도의 경우 공단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납부(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10%를 가산하여 공단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)하여야 하며 2차년도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전차년도 종료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합니다.
- 다. 사용료 납부는 일시납과 분납(연 12회)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, 분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(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)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라. 분납 보증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해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0. 청렴계약 이행준수

우리 공단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최종낙찰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1. 유의 사항

- 가.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조건,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점포 위치, 내·외부상태, 배기, 실사용면적, 기존 입점상인의 존재여부 등 사용허가 대상을 확인하고, 입찰공고문 및 허가조건 등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가스수도는 현재 설치된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(붙임 파일 참조)하며, 신규 설치 금지됨
- 다. 낙찰자의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므로, 사전에 주변 및 타 지역 시장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비품·실내 인테리어 시설은 낙찰자 부담이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낙찰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
※ 점포는 현황대로 낙찰자가 인수하여 사용하는 것이며, 공단은 사전 협의 없는 출입문타일·간판 조명벽체 설치보수 및 도배 등을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현장을 답사문의한 뒤 응찰할 것

마. 점포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절대 불가하며, 이를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바. 낙찰자는 공단이 산정한 관리비를 매월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사. 낙찰자에 결격사유 확인 또는 기한 내 사용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점포는 재공고하며, 차순위자에게 낙찰하지 않습니다.

아. 본 입찰대상 점포의 사용허가 개시일은 2026. 5. 1.입니다.

자. 2026. 5. 1.부터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2026. 5. 1.에 명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(대구시와 공단이 합동으로 명도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). 낙찰자는 낙찰받은 점포가 사용허가 개시일(2026. 5. 1.)까지 명도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허가를 포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찰보증금 및 선납사용료 전액을 반환합니다.

※ 낙찰자는 낙찰점포의 미명도를 이유로 대구시와 공단에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

차. 낙찰점포의 명도 지연으로 인해 2026. 5. 1. 이후 점포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정상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(별도 통보).

12. 낙찰자 계약 시 지참서류

가. 사용허가 신청서 1부

나. 신분증 사본 1부

다. 주민등록등(초)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

라.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

마. 사업자등록증, 사용인감 지참

※ 점포에 해당하는 주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공단이 추후 지정하는 날짜까지 제출

바. 청렴계약이행서약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

※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·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

13. 기타 사항

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진행사항 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“온비드” (<http://www.onbid.co.kr> ☎1588-5321)에, 사용허가 입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공단(상가관리팀 ☎053-426-611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4. 7.

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